



iSSUE BRIEFING

푸드플랜 실행의 근거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

이슈브리핑

2021. 11. 24 vol.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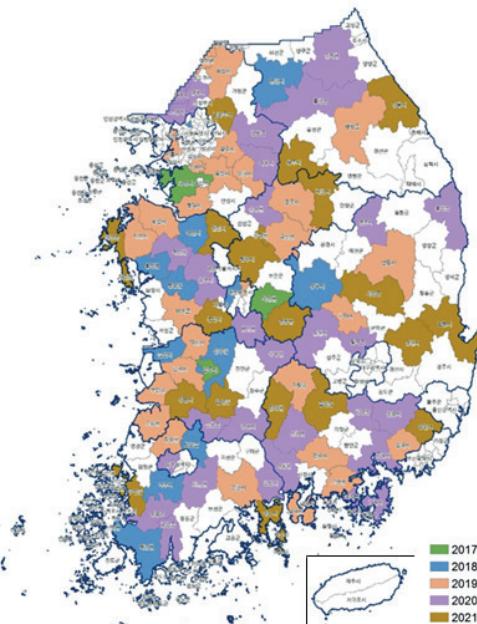
연구진
배균기_산업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황영모_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국주영은_전라북도의원

1.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 먹거리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해결을 통해 사회·경제·환경 등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전략이자 실행계획으로서 ‘지역 푸드플랜’이 수립·시행되고 있음
- 전국의 110개(광역자치단체 15, 기초자치단체 95) 지역에서 먹거리 종합전략인 ‘푸드플랜’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먹거리 기본조례’에 대한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2021.6 현재)
- ‘먹거리 기본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¹⁾을 보장하고, 지역단위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음
- 전국의 54개(광역자치단체 11, 기초자치단체 43) 지역에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먹거리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푸드플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재정적 지원, 위원회 중심의 추진체계에 그치고 있어 계획의 실행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한편 전라북도의회는 올해 ‘전라북도 푸드플랜’이 수립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2차례의 공청회를 거치고 입법절차를 밟고 있음
-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는 ‘기본조례’로서 먹거리 관련 정책을 종합화·체계화하여 통합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먹거리 체계의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는데 의미가 있음
- 무엇보다 먹거리 계획의 수립, 시행, 정책조정, 민관협력, 시민참여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요구임
- 이 글은 ‘먹거리 기본조례’의 제정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안)’의 주요 방향과 핵심 내용을 되짚어 보는 데 목적이 있음

〈그림1〉 지역 푸드플랜 수립 현황

1) ‘먹거리 기본권’은 경제적 형평과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양적·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를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관계부처 합동, 2020)



자료. 황영모(2021a)

푸드플랜 실행의 근거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

2. 전국단위 먹거리 기본조례의 현황

1) 전국단위 먹거리 기본조례의 제정 현황

- 2021년 10월 기준 전국의 54개(광역 11, 기초 43) 지방자치단체에서 먹거리 관련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2019.1.7.)’가 처음 제정된 이후 먹거리 관련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는 지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전라북도는 전주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20년), 남원시·익산시·고창군(‘21년) 등 7개 시·군에서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시행시기	광역자치단체 (11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43개 시·군)
2019년 (5개)	경기도, 충청남도	해남군, 고양시, 아산시
2020년 (23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서대문구(서울), 광산구(광주), 구리시, 김포시, 화성시, 파주시, 시흥시, 동해시, 평창군, 춘천시, 홍천군, 청양군, 태안군, 나주시, 장성군, 거창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2021년 (26개)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덕구·유성구(대전), 광명시, 용인시, 이천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부천시, 가평군, 제천시, 쟁주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김해시, 거제시, 남원시, 익산시, 고창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리(검색일 2021.10.24.)

〈표1〉 전국의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현황

2) 전국단위 먹거리 기본조례의 주요 내용

- 여러 지역에서 제정한 먹거리 기본조례의 기본 구조는 ‘총칙, 종합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설치·운영, 먹거리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마다 내용적인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목적, 정의, 단체장의 책무, 종합 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설치·구성, 사업·재정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총칙’에서 기본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이념), 단체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역할,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규정함
 - 주요개념(먹거리, 먹거리 기본권,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먹거리 보장 등)을 정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장 책무를 규정
 - 기본원칙(이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주민의 권리와 역할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다룸
- ‘종합계획 수립·시행’에서 먹거리 계획을 수립(대부분 5년 단위)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방향, 목표 및 실행계획, 예산운영, 민관협력 체계, 제도개선 등 포함사항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임
 -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와 실태조사는 일부 지역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명시하지 않음

- ‘먹거리 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역할과 기능, 위원 구성, 운영·지원 방식 등 세부사항은 지역마다 상이하게 정하고 있음
 - 먹거리 정책의 방향·조정, 관련 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평가, 상호협력,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협의하는 역할
- ‘먹거리 정책’과 관련하여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만 규정

〈표2〉 전국단위 먹거리 기본조례의 주요내용

구분	관련 조항	주요내용	비고
총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 	공통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먹거리 기본권,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먹거리 보장 등 정의 	공통
	기본원칙 (기본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인지, 정책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 	일부
	단체장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공통
	지역주민의 권리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유지에 필요한 먹거리를 섭취할 권리,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 	일부
	다른 조례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름 	일부
종합계획 수립·시행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종합계획(기본계획·전략)의 수립·시행 : 대부분 5년 단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목표 및 실행계획, 예산운영, 민·관협력, 제도 개선 등 -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는 일부 지역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공통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한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일부
위원회 설치·운영	먹거리 위원회 설치·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을 위한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기능, 구성(대부분 20~50명 내외), 운영 등 세부사항은 지역마다 상이 - 정책 방향·조정, 계획 수립·변경, 시행·평가, 상호협력, 환경조성 등 심의 	공통
	먹거리 위원회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 관련 조항은 지역마다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임기·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제, 위원회 존속기간 등 -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간사·서기, 활동(수당) 지원, 공청회 등 	일부
먹거리 정책	사업·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사업추진 기관·단체·법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공통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먹거리정책 등 홍보 	일부

푸드플랜 실행의 근거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

3) 전라북도 먹거리 관련 조례 현황

- 전라북도(광역 지자체)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먹거리 관련 조례는 총 44 개 정도이며, 농어업·농어촌 분야가 21개로 가장 많고, 생활·복지 8개, 식품·안전 6개, 지역사회·상생협력 5개, 로컬푸드·공공급식 2개, 민관협력·거버넌스 2개 등으로 파악됨
- 먹거리 기본조례는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여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령이므로 이를 조례와의 관계성이 중요함
-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먹거리 기본조례’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건강·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개별 조례들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분야	관련 조례(요약)
생활·복지(8)	채식환경, 생활안전, 치유농업, 노인복지, 식생활교육, 영유아보육, 도시농업, 소비자 기본조례 등
식품·안전(5)	식품진흥기금, 축산물 안전관리, 향토음식, 축·수산물 안전성·품질향상, 식품안전 기본조례 등
농어업·농어촌(21)	소규모 식품가공, 농림수산발전기금, 농산물 통합마케팅,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농어업인 육성·지원,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농업인 소득안정, 농촌융복합산업, 친환경농어업, 스마트농업, 종자산업, 우리밀·콩, 조사료 생산, 쌀가공·약용작물·양봉·천일염·한우 산업 육성, 농산물 가격안정,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등
로컬푸드·공공급식(2)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사회·상생협력(5)	식품기부,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유통산업 상생협력, 사회적농업,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등
민관협력·거버넌스(2)	삼락농정위원회,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등 설치·운영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리(검색일 2021.10.24.)

〈표3〉 전라북도의 먹거리 관련 주요 조례 현황

3.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²⁾

1) 기본조례로 제정하는 이유

- 먹거리 기본조례는 ‘먹거리 기본법’이 입법 추진되어 국가 법률이 없는 가운데 먹거리 종합전략을 지자체가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담은 ‘자치 기본조례’라는 특성을 가짐
- 일반적으로 기본조례는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종합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청에 부응하고, 자치입법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최환용·정명운, 2015)
- 그러나 지금까지 제정된 전국단위의 먹거리 기본조례는 내용에서 행정·재정적 조치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먹거리 전략의

2) 황영모(2021b)에서 작성

실행을 위한 기본조례로서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먹거리 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먹거리 전략의 실행기준(규범)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관련 개별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조례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등을 반영해야함
- 이러한 측면에서 전라북도의회(국주영은·강용구·박희자 의원 공동발의)가 제정을 추진하는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는 먹거리 전략에 관한 기본원칙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실행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먹거리정책책임관 지정, 도민참여의 장, 실태조사 기반의 종합정보 관리 등이 타 지역 조례와 차별되는 내용임

2) 기본조례에 담겨야 할 골자

① 먹거리 기본조례로서 명확한 성격과 기능 제시

-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조례를 통해 실현하고자하는 먹거리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각 주체들의 권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기본원칙을 제시해야함
-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도와 관계 기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의 순환 체계 확립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하게 해야 함
- 먹거리 관련 정책이 여러 부서와 기관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화·체계화하여 통합 정책으로서 주민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 규칙과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함

② 먹거리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체계 구축

-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규정을 마련해야함
-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단계별 추진목표, 실행계획 및 중점과제, 재원규모와 조달방안, 민관협력 체계, 관계 기관의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함
- 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체계를 갖춰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가는 장치를 마련해야함

③ 먹거리 정책의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 먹거리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관계 기관의 조화로운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총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야함

푸드플랜 실행의 근거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

-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 먹거리 정책을 실효적으로 실행해가기 위한 전담조직, 부서간 정책을 총괄 할 먹거리정책책임관, 민관협력 원칙에 기반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해야 함

④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민 참여구조 마련

- 먹거리의 기본권 보장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며, 도민이 주도적으로 먹거리 보장 수준을 개선해갈 수 있도록 상시적인 참여공간과 소통구조 마련이 중요함
- 도민의 먹거리 수요에 대응하고,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지식·정보를 보급하도록 규정해야 함
-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서 도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실천이 요구되는 만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해야 함

4.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내용³⁾

1)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구성

-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안)」은 5개 장과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도와 관계 기관 등의 책무를 정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1장 총칙’에서 기본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원칙, 주요 용어 등을 정의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 도민의 권리와 역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
- ‘제2장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에서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
- ‘제3장 먹거리 위원회 운영 등’에서 위원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숙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 먹거리정책책임관 지정,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4장 먹거리 종합정보의 관리와 협력’에서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 교육·홍보, 실태조사·연구 등 수행에 대해 규정함
- ‘제5장 보칙’에서 공로자에 대한 포상과 시행규칙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3) 이 내용은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 공청회 및 관계자 실무검토를 통해 정리한 내용임

(표4)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장 총칙	제1~3조	기본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원칙, 주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제4~5조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종합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제6~7조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도민의 권리와 역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제2장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제8~9조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먹거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제10조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3장 먹거리 위원회 운영 등	제11~13조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제14조	먹거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먹거리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15조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의 구축·시행과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제16조	도지사와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17조	도민이 주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숙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4장 먹거리 종합정보의 관리와 협력	제18조	도민에게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대하여 규정함
	제19조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실태조사·연구 등 수행에 대해 규정함
제5장 보칙	제20조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공로가 현자한 자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
	제21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제1장 총칙

- [목적]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와 관계 기관 등의 책무를 정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의 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 [기본원칙]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먹거리 보장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먹거리 기본조례의 기본원칙〉

-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의 발전
- 전라북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
- 먹거리의 불안 해소와 먹거리 복지 기반의 조성
- 환경변화와 생태계 교란에 대응한 생태친화적 먹거리 수급체계 확립
- 농업과 먹거리의 관계 강화를 통한 먹거리 소비문화 확대와 윤리 확립
- 식생활 교육의 확산과 강화
-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구축과 운영

푸드플랜 실행의 근거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

-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주요 용어의 개념〉

지역 먹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가공된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먹거리 기본권	경제적 형평과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양적·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를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복지, 교육, 폐기물 처리 등 순환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 연계되어 있는 구조
관계 기관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단체

- [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먹거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도지사는 먹거리 정책의 실행을 위해 정부, 시·군,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학교 급식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육감은 먹거리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도민의 권리와 역할 등] 도민은 먹거리 기본권을 가지며,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음

- 도민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함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름

3) 제2장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 | | |
|---|---------------------------------|
| •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 • 분야 및 단계별 추진목표, 실행계획, 핵심과제 |
| •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 전라북도 먹거리 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과 운영 |
| •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먹거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먹거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도지사와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계획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

- [재정지원]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4) 제3장 먹거리 위원회 운영 등

-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전라북도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 먹거리 정책 협력사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평가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 [먹거리 위원회의 구성]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전라북도 먹거리 위원회의 구성〉

당연직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먹거리 업무 관련 국장 • 전라북도교육청 먹거리 업무 관련 국장
위촉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의 먹거리 체계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 - 지역 먹거리 관련 대학교수 - 지역 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시·군 먹거리 정책 업무 담당 과장 -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원장 :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및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함
위촉위원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차례 연임이 가능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함
 -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함(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운영세칙으로 정함

- [먹거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먹거리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음
 - 먹거리정책책임관은 관계 기관, 시·군, 지원센터, 기타 참여단체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활동 사항 등을 관리·점검하고, 필요시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함
 - 먹거리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의 구축·시행과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먹거리 통합

푸드플랜 실행의 근거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

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함

- 도지사는 통합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함
 - 그 밖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사업의 범위와 권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 [공청회 등 개최] 도지사와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음
- [숙의기구] 도지사는 도민이 주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숙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숙의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함

〈전라북도 먹거리 숙의기구의 기능〉

-
-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요사항의 제안 및 토론
 - 종합계획의 수정 보완 요구 사항 제안 및 토론
 - 그 밖에 숙의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

5) 제4장 먹거리 종합정보의 관리와 협력

- [먹거리 지식·정보의 보급 등] 도지사는 도민에게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함
- 도지사는 먹거리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인터넷 통합정보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먹거리 공공성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교육·홍보·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홍보 및 실태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6) 제5장 보칙

- [포상]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모범이 되는 관계자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
-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0.1),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0~2024).
최환용·정명운(2014), '자치기본조례의 현황과 입법체계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황영모(2021a), '국가 식량계획 의의와 지역 푸드플랜의 방향', 현장토론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황영모(2021b),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 공청회 발표자료, 전라북도의회.
황영모 외(2020),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 전북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
.....
.....
.....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
2021. 11. 24 vol.255



발행인_권혁남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